

20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혹서기 폭염재해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2.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 최종 지원규모는 확정 이후 일선기관별 예산 배정

3.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3]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참여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조회 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 확인

○ (지원기준)

품목명	지원기준		비고
	건설업본사	제조업 등	
이동식에어컨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 · 도난 방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초과 지원 불가 ※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 '20~'22년도 기자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후 온도측정 불필요사후기술지도 1~3년냉풍기 등 사무실용 지원 불가
그늘막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 ·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 · 도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 불가※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기설간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설립일 현재 사업하는 근로자 수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 (가격기준)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냉방능력		~3,000kcal/h (3,489W)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필요 (원가계산서 등)	
	3,000kcal/h (3,489W)	4,000kcal/h (4,652W)	1,138천원	796천원
	4,000kcal/h (4,652W)	5,000kcal/h (5,815W)	1,228천원	859천원
	5,000kcal/h (5,815W)	6,000kcal/h (6,978W)	1,488천원	1,041천원
	6,000kcal/h (6,978W)	7,000kcal/h (8,140W)	1,713천원	1,199천원
	7,000kcal/h (8,140W)	8,000kcal/h (9,304W)	2,012천원	1,408천원
	8,000kcal/h (9,304W)	9,000kcal/h (10,465W)	2,052천원	1,436천원
	9,000kcal/h~ (10,465W)		2,559천원	1,791천원

* 냉방능력 3,000kcal/h(3,489W) 미만의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 징구 필요

*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표준가격을 산출 하였으며, 제품의 소재, 성능,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늘막)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최대지원한도 (표준가격×0.7)
면적 (=그늘막 가로×세로)		~5m ²	234천원	163천원
	5m ²	10m ²	256천원	179천원
	10m ²	15m ²	300천원	210천원
	15m ²	20m ²	320천원	224천원

* 측면 그늘막, 벨크로테이پ, 염색 여부, 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사항으로 지원불가

○ (지원제품)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공급업체(제작·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공급업체란 지원품목을 단순 제작·판매·공사하는 업체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 안전보건공단은 공급업체와 어떠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은 특정 공급업체 또는 제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적합한 제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 다만, 안전보건공단은 제품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급업체에 대한 단순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등재된 공급업체는 공단에 기본정보 제공을 희망한 업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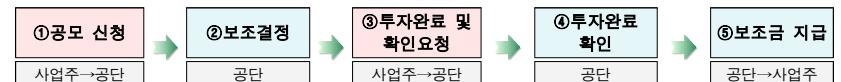
☞ 온라인 구매 등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설비) 및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공급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공급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추진절차]



가. 공모신청

○ (신청기간) '23. 3. 13.(월) 14:00 ~ 3. 31.(금) 14:00

○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공급업체에서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구 분	비고
❶ 견적서 1부	
❷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❸ 지원품목 설치 대상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 (현장 사진, 공단 기술보고서 등)	
❹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❺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제조업 등) 작업장 내 이동식 에어컨 설치위치 사진 등	
❻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필요 시

* ❻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❾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의 품목만 징구[첨부2]

* 가격결정 근거자료: 원가계산서,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등

나. 보조지원 결정

-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
[첨부1]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및 접수
 - ▣ 폭염재난 예방품목 외 고위험개선 품목 신청 시 가중치 부여[첨부2]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
- 지원결정 결과는 4월말(예정)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 로그인 > 사업신청 내역 >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결정통보”

다.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

- (시설개선)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폭염 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 (확인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구 분	비고
❶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❷-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구매 시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❷-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❹ 지급보증보험 증권	
❺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지급보증보험 증권>

- ▶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날짜~'23.12.31.)+사후관리기간(4년)으로 적용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년
- ▶ 피보험자는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로 함
- ▶ 지급보증보험 가입 문의처: 관할 지역 SGI서울보증보험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사업장 및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흘텍스))
 -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공급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라. 투자완료 확인

-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상의 지원품목 사양, 납품 공급업체 일치 여부 등

마. 보조금 지급

-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일정은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23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

6.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조지원 취소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부정수급 금지 >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금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과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 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	

첨부 1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①'22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③ 조선업종(226**)

선정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공통적용 항목	최대 70점	
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수 4인 미만 10점, 4~6인 미만 5점, 5~9명 3점	최대 10점	'23.3월 공식통계 상시 근로자수 기준
② 폭염재난 예방설비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10점	
③ 폭염재난 취약 사업장* * 건설업종[90515], 농업[800**], 어업[700**], 택배·운수업 [운수부대서비스업(50005), 항만내의육상하역업(50008), 육상화물취급업(50010), 각종운수부대사업(50011), 화물운수업·택배업·퀵서비스업(50105~501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0102)	10점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업종
④ “고열” 유해인자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10점	'2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⑤ 폭염 예방설비 외 사고사망 예방설비 추가 신청사업장 - 화재·폭발 예방설비(고정 설치품에 한함) 20점 - 이외 추가 사고사망 예방설비(품목코드)별 5점	최대 30점	폭염예방설비와 동시 고위험개선 신청품목에 한함 [첨부2]
■ 자율활동 우수항목	최대 30점	
⑥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⑦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 - 인정 10점, '22년 컨설팅 실시사업장(인정사업장 제외) 5점	10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⑧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 - '22년 공생협력 참여 협력업체 포함	5점	
계	10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⑧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로 수정

첨부 2

폭염설비 외 사고사망 예방설비(우선선정 점수 부여 가능 품목)

■ : 기준가격 품목(가격결정 근거자료 생략가능) ■ : 기준가격 이외 품목(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① 지게차 충돌방지설비 <전후방카메라, 감지센서, 캐빈>	② 화재폭발 예방 설비(고정식에 함) <유해가스모니터링, 경보장치 등>	③ 고소작업대 * 안전인증품 한정
④ 원로송금 및 취출 자동화설비 <프레스, 전단기>	⑤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광저속 양수조작식 제어등 방지장치 등>	⑥ 프레스-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 클램프 능력, 타입에 따른 차등
⑦ 질식재해 예방설비 <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험기설비>	⑧ 천장크레인(3톤미만) 교체 * 09년 이전설치 및 설비구조불량에 함	⑨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호장치 <안전바, 안전봉(코너설치형)>
⑩ 소음방지시설 *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⑪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권과-전복, 과부하방지장치>	⑫ 크레인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등>
⑬ 주락방지시설 <안전간판, 방벽, 기구분리기, 이동식 사다리 등>	⑭ 끼임방지 시설 <방호덮개, 롤러기컨베이어 안전장치 등>	⑮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 <후방카메라, 인체감지센서>
⑯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방호율, 과부하방지장치 등>	⑰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장치 * 3톤 미만 무인식 한정	⑱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취출로봇(자율안전확인), 호프로더>
⑲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방호율, 라이트카튼, 안전매트 등>	⑳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설비 <후방카메라, 인체감지센서>	㉑ 건설기계(굴착기) 안전장치 <자동안전휀터클러, AVM일체형>
㉒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작제함 * 10개이상, 100L, 200L 용량	㉓ 식품가공용기계 교체 * 자율안전확인신고품 한정, 기존품 폐기	㉔ 고위험작업 대체설비(자동화설비)

첨부 3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

Q.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원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SMINFO websit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nfirmation' section. It includes a search bar for 'Business Name' and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elow the search bar are sectio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formation'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nfirmation Application'. There are also sectio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Verification Service'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Verification Check'. At the bottom, there is a step-by-step guide: STEP 01 (Small and Medium Enterprise Registration), STEP 02 (Business Registration), STEP 03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nfirmation Application), STEP 04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nfirmation), and STEP 05 (Checklist).

The screenshot shows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nfirmation' application form. It includes fields for 'Business Nam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usiness Type', 'Business Address', 'Business Phone Number', 'Business Email', and 'Business Tax Number'. There is also a section for 'Business Description' and a 'Business License' section.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note about the validity period and a sec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Verification'.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 확인사항증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 지원불가)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구분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98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90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26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81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6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3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64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35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35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5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3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63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34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5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6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3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13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5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38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1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42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5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9